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3. 11.

도 하 석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도 하 석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현행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,
- 희생 ·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법령입안 · 심사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2조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, 제2호는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사항을 반영하였고,
- 안 제3조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중복 해석되는

보훈단체를 제2조제4호의 보훈단체로 적용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7조제2호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“애국지사”를 명확하게 정의한 “희생·공헌자”로 개정하여, 장례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확정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따르는 상위법 「5·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이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,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고자 하며,
-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중단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민원 발생 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,
- 안 제7조의4를 신설하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구민 중 희생·공헌자로서 대상이 됨에도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달서구민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, 희생·공현자를 위한 장례 지원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희생·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
-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도하석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3135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3. 11. 3.

발의자: 도하석, 김장관, 이진환, 황국주,
정순옥, 박왕규, 장호섭, 권숙자,
이영빈

1. 개정이유

가.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,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입안·심사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(안 제2조)
- 나.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사항을 반영(안 제2조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)
- 다.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중복 해석되는 보훈단체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정(안 제3조)
- 라. “애국지사”의 범위를 “희생·공헌자”로 개정하여 장례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(안 제7조제2호)
- 마. 상위법의 법률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(안 제7조의2 제1항제4호)
- 바. 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차후 민원발생 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규정 신설(안 제7조의3)

사.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구민 중 희생·공헌자로서 대상이
됨에도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 규정 신설(안 제7조의4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 1
- 나. 관계법령: 붙임 2
- 다. 비용추계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희생·공헌자”라 함은”을 ““희생·공헌자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국가보훈대상자”라 함은”을 “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보훈단체”라 함은”을 ““보훈단체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“국가보훈부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”을 “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, “단체(이하 “보훈단체”라 한다)”를 “단체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관련 규정에 의거”를 “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애국지사”를 “희생·공헌자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국가보훈처”를 각각 “국가보훈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

2호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훈예우수당”을 “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따로 정한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”을 “수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지급의 중지 및 환수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
 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
2.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의4(지급대상자의 관리)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불임1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 ---.
1. “ <u>희생 · 공헌자</u> 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	1. “ <u>희생 · 공헌자</u> 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~ 라. (생 략)
2. “ <u>국가보훈대상자</u> ”라 함은 희생 ·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	2. “ <u>국가보훈대상자</u> 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3.“ <u>국가보훈관계 법령</u> ”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	3.----- <u>이란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4. <u>“보훈단체”</u> 라 함은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내	4.“ <u>보훈단체</u> ”란 ----- -----

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5. “선순위자”란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.

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(이하 “보훈단체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7조(복지지원 등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

2.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

-----.

5. -----

국가보훈부-----
-----.

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-----

-----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부장관-----
-----단체-----
-----.

제7조(복지지원 등)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
정하는 바에 따라 -----

2. --- 희생·공헌자 -----

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
화운동희생자 본인

5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
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
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
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
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
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
지급한다.

<신설>

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보훈예우수당
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 -----
----- 정한다.

③ 수당-----

-----.

제7조의3(지급의 중지 및 환수)

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
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
야 한다.

1.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
우
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
급된 경우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
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
있다.

1.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
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

<신 설>

지급한 경우

2.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
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
경우

제7조의4(지급대상자의 관리) 구
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
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
상자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
야 한다.

불임2

관계법령

□ 국가보훈 기본법

제2조(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,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희생·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
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